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1년도 제3차 회의

1. 일 자 2011년 1월 20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음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4호 — 「2011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1) 담당 부총재보는 정부가 국회에서 2011년도 기채한도 의결을 받아 당행 앞으로 2011년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1년중 당행이 정부에 대하여 신규로 대출할 금액의 최고한도와 상환기한, 이율 및 기타 조건을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당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보다는 재정증권의 시장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정부의 일시차입금 이용기간이 차입건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대출금리를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설정하 는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부의 차입기간이 통상 3개월 이내로 단기인점, 91일물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대표적 단기시장금리인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정부가 통합계정의 일시차입금 한도를 지난해보다 축소 신청한 배경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통합계정의 최고 차입잔액이 한도에 크게 미달하였던 점, 금융경제상황 호전 등으로 금년도 재정조기집행률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1년도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 한도와 대출조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1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참조)